

서산군주차장특별회계 설계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용자의 대상, 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등)

- ① 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용자의 대상, 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등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용자대상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주차장의 규모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임.

2. 용자방법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신청을 하면 군수가 심사후 용자결정

3. 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함.

- ② 기타 용자금의 지급절차, 용자비율,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행	개정안
	"(신설)"	<p>제4조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용자의 대상, 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 등) ① 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용자의 대상, 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등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용자대상</p> <p>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주차장의 규모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임.</p>

현행	개정안
<p>제4조 (준용) “(생략)”</p>	<p>2. 용자방법 <u>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신청을 하면 군수가 심사후 용자결정을</u></p> <p>3. 용자금의 상환 <u>용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함.</u></p> <p>① 기타 용자금의 지급절차, 용자비용,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p> <p>제5조 (준용) “(현행 제1조와 같음)”</p>
<h2 style="text-align: center;">서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h2> <p>서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산군주차장설치조례”를 “서산군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로 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등)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p> <p>② 제1항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군수의 급지별, 주차장 이용시간별 및 주차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p> <p>③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급지는 군수가 교</p>	<p>통여건 및 지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p> <p>이 경우 급지별 요금 수준은 1급지가 2급지의 1.5배 내지 2배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p> <p>④ 주차장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는 2시간 초과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가산한다. 다만 3급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주차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군수가 정한 주차수요 밀집 시간대에 주차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산한다.</p> <p>⑥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이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p> <p>⑦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p> <p>⑧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p>